

공정거래법 개정, 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될 전망

2020.12.10

기업평가본부

전지훈

연구위원

☎ 02-787-2243

jihoon.jeon@kisrating.com

Executive Summary

2020년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상법 개정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의 경우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40년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법 공표 1년 후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강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한도 상향 등이 있다. **이 중 지주회사 요건 강화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법 개정 이후 발생한 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도 삼성그룹을 제외하면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의 경우 대주주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충분한 경과규정을 감안할 때 기업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사익편취 규제는 그 대상이 크게 확대(2020년 기준 210개사 → 최대 598개사)됨에 따라 해당 그룹의 지배 및 사업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제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구조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지주회사의 보유 지분율이 높은 그룹 내 비상장 자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큰 회사가 향후 구조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법 개정 이전부터 일부 그룹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 시행까지 1년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조개편 흐름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영향

구분	영향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요건 강화	- 법 개정 후 설립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새로 편입하는 자회사-손자회사에 해당, 과거 대비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편입시 지분매입 필요자금 증가할 전망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 법 개정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된 경우에만 적용, 대상 그룹 순환출자 해소 가속화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강화	- 계열사간 합병시 그룹 내 금융회사 보유 의결권 활용 차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대주주 보유 공익법인 의결권 활용 금지로 대주주 지배력 약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 규제범위 확대로 해당 회사의 주주구성 변경, 외부매각 또는 사업구조 개편 활발해질 전망 : 총수일가 지분 20%(상장사 30%) 이상 보유 회사 →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회사 및 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보유한 자회사(상장/비상장 구분 없음)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 상향	- 향후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담 증가

신용평가 관점에서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개편은 사업위험 또는 재무위험의 변화를 통해 자체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계열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의 변화로 최종신용등급에 반영될 수 있다. 당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응하는 각 그룹들의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이나 재무구조의 변동, 또는 계열 내 중요성 및 유사시 지원가능성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평가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다.

Contents

1. 공정거래법 개정 주요 내용.....	2
2. 공정거래법 개정의 영향 및 모니터링 요소.....	3
3. 사익편취 규제 추가 해당 회사별 현황.....	7
4. 기존 사익편취 규제 해당 회사별 현황.....	11

당사에서는 2018년 공정위의 전면개정안 발표 이후 공정거래법의 주요 규제와 개정안이 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 나아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Special Report를 발간한 바 있다. 개정안이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금번 개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당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본 고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대신 개정안의 영향만 간략히 살펴보는 한편, 개정 내용 중에서 특히 그룹의 구조개편에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익편취 규제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Update하였다. 본 고의 배경이 되는 공정거래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Report를 참조하기 바란다.

- [그룹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 공정거래법\(Part I\): 공정거래법 주요 규제와 관련 사례분석](#)
- [그룹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 공정거래법\(Part II\):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과 모니터링 요소](#)

1. 공정거래법 개정 주요 내용

2020년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포함된 상법 일부개정, 비(非)지주 그룹의 금융회사 감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금융그룹감독법(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의 경우 개별기업의 신용평가 측면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40년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공정거래법(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공정거래법 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폐지가 예상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이는 공정위에서 2018년 8월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한지 약 2년만이다. 동 법은 공포 1년 후인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요건 강화	- 지주회사 행위제한 중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을 상향 : 상장사 20% → 30%, 비상장사 40% → 50% -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및 편입된 자회사·손자회사가 대상 (기존 지주회사가 신규로 자회사·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도 해당)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시 기존 순환출자도 의결권 제한 - 법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정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강화	- 합병, 영업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 15% 내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하였으나, 합병 등의 상대방이 계열사인 경우는 금지로 변경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계열사가 상장사인 경우 임원임면, 합병 등에 한하여 특수관계인 합산 15% 내에서 허용(금융회사 의결권 제한과 예외조건 동일)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 계열회사, 20% 이상 비상장 계열회사 →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국내 계열회사 및 이들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국내 자회사

형벌규정 정비	- 일부 위반행위의 형벌규정 삭제하는 대신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 불공정거래행위(관련매출 2% → 4%), 시장지배력 남용(관련매출 3% → 6%), 부당한 공동행위(관련매출 10% → 20%)
기타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 벤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총자산이 GDP 0.5% 이상) -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

주1) 법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3년간 단계적으로 한도를 하향함(30% → 25% → 20% → 15%)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당사에서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개정안 발표 이후 공정거래법의 주요 규제와 개정안이 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 나아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Special Report를 발간한 바 있다. 개정안이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된 점을 고려할 때 금번 개정이 기업 및 그룹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당시 Report에서 분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본 고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대신 개정안의 영향을 간략히 살펴보는 한편, 개정 내용 중에서 특히 그룹의 구조 개편에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익편취 규제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Update하였다. 본 고의 배경이 되는 공정거래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Report를 참조하기 바란다.

관련 Report:

- [그룹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 공정거래법\(Part I\): 공정거래법 주요 규제와 관련 사례분석](#)
- [그룹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 공정거래법\(Part II\):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과 모니터링 요소](#)

2. 공정거래법 개정의 영향 및 모니터링 요소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 중 그룹 지배 및 사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요건 강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그리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를 들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과징금 부과 상한이 상향된 점도 향후 법 위반 시 기업들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①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요건 강화(상장사 20% → 30%, 비상장사 40% → 50%)**의 경우 신규로 설립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은 제외된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지주회사들의 기업 인수나 지배구조 재편 시 요구되는 재무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②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또한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그룹에 적용되어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지분 의결권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공정위가 기존의 대기업 순환출자가 빠르게 해소된다는 전제하에 동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차그룹 등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자발적인 해소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③**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강화**는 금융 및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의 경우 임원임면이나 합병 등의 사안에서는 현재 특수관계자 포함 15%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합병 및 영업양도가 다른 계열사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의결시에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계열회사간 합병이 기존 예외규정의 목적인 경영권 방어와는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④**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사 지분에도 금융회사와 같은 의결권 제한 규제를 부과함에 따라 최대주주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동 규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규정과 달리 법 공포 2년 후부터 적용하며, 특수관계자 합산 의결권 허용범위(임원임면, 합병 등 한정)도 첫째 30%에서 3년간 5%씩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기기업집단 중 상당수가 공익법인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보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비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금융회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제도가 개편되면 이미 의결권 제한을 일부 적용받고 있는 삼성생명 및 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의결권([그룹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 공정거래법\(Part I\)](#)의 4.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참조)은 삼성전자와 다른 계열사간의 합병 등의 의결에는 활용할 수 없게 되며,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2020년 9월 말 0.11%)도 그 행사가 제한되므로 향후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이를 감안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⑤**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강화**는 금번 개정 내용 중에서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사익편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의 범위가 기존에 총수일가가 20%(상장사 30%)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상장구분 없이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와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자회사로 넓어지며, 대상회사 수는 2020년 기준 210개에서 최대 598개¹까지 늘어날 수 있다(개정으로 새로 규제에 해당하는 회사 내역은 7~10page 참조).

규제대상으로 추가되는 회사는 대부분 지주회사의 자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주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가운데, 지주회사들이 행위제한 충족(현행 상장 20%, 비상장 40%, 금번 개정으로 10%p씩 상향 예정)을 위해 특히 비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자회사 지분을 50% 넘게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살펴보면 종이제품 제조업(2019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 90.8%)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69.1%), 전문 서비스업(55.1%), 전문직별 공사업(48.9%), 사업시설 관리업(47.2%) 순이며, 내부거래 중 수익계약 비중도 100%에 달하거나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¹ 총수일가 20~30% 보유 상장사 30개, 기존 규제대상 및 총수일가 20~30% 보유상장사의 자회사 358개 (매출액이 없는 회사 45개 제외시 313개) 가산

공정거래법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조항 변경 내역

기준	<p>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23조의2)</p> <p>-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 한정)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동일인 및 그 친족) 또는 총수일가가 20%(상장사 30%)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하는 행위 금지</p> <p>①정상적인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¹⁾</p> <p>②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하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p> <p>③특수관계인과 현금 및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¹⁾</p> <p>④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몰아주기’)²⁾</p> <p>- 지원주체, 지원객체 외에 해당 행위를 지시 또는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제재 대상</p>
개정	<p>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47조)</p> <p>-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 한정) 소속 국내 회사가 총수일가(동일인 및 그 친족) 또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50% 초과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하는 행위 금지</p> <p>①정상적인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¹⁾</p> <p>②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하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p> <p>③특수관계인과 현금 및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¹⁾</p> <p>④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몰아주기’)²⁾</p> <p>- 지원주체, 지원객체 외에 해당 행위를 지시 또는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제재 대상</p>

주1)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거래금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경우 예외
 2)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또는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추가 규제대상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별 분포 (단위: 개, %)

구분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자회사 수					
	자회사 전체		현 규제대상의 자회사		총수일가지분 20~30% 상장사의 자회사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전체	313	100.0	197	100.0	116	100.0
내부거래 없음	76	24.3	47	23.9	29	25.0
내부거래 있음	237	75.7	150	76.1	87	75.0
0% 초과 ~ 15% 미만	104	33.2	73	37.1	31	26.7
15% 이상 ~ 30% 미만	37	11.8	27	13.7	10	8.6
30% 이상 ~ 50% 미만	22	7.0	11	5.6	11	9.5
50% 이상 ~ 80% 미만	29	9.3	13	6.6	16	13.8
80% 이상 ~ 100% 미만	28	8.9	17	8.6	11	9.5
100%	17	5.4	9	4.6	8	6.9

주) 2019년 말 기준, 전체 358개사 중 매출액이 없는 45개사는 제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범위에 포함되더라도 비정상적인 거래나 일감몰아주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재대상이 되지 않으며, 총수일가의 지분 처분이나 내부거래 비중 축소 의무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규제대상에 해당함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큰 회사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소유 및 사업 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종합하면, 그룹 내 비상장 자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큰 회사가 향후 구조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형태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그룹 외부로의 지분 매각이나 합병, 또는 계열사간 지분교환이나 물적분할 등을 통한 자회사의 손자회사화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전면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동 개정안이 발표된 시점 이후로 일부 그룹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LG그룹은 (주)LG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舊서브원)의 MRO사업부문(現서브원)을 2018년 물적분할한 후 분할신설법인의 지분 중 60.1%를 어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하였다. 여기에 2020년 4월에는 (주)LG가 보유한 SI회사인 LG CNS의 지분 35%를 크리스탈코리아(유)에 매각하여 지분율을 50% 아래로 낮춤(84.95% → 49.95%)으로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SK그룹도 2018년 중 SK디앤디의 총수지분 매각과 더불어 지주회사 SK(주)가 보유한 SK해운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를 처분하고 있으며, SK인포섹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SK텔레콤의 자회사로 편입하여 손자회사로 전환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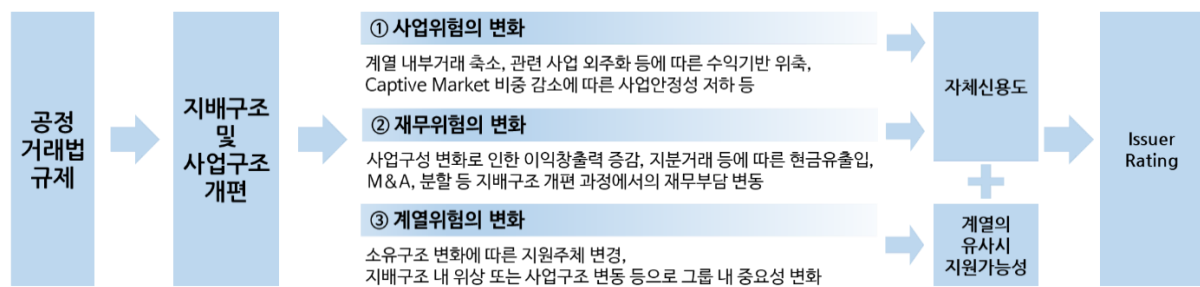
현대차그룹의 광고업체인 이노션도 최대주주인 정성이 이사가 2019년 5월 지분 10.3%를 롯데컬처웍스에 매도함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결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는 사업구조 개편, 구조조정, 경영권 승계 등 다양한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같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에 따른 변화는 규제를 통해 정책당국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바탕으로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아직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까지 1년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강화되는 내부거래 규제에 대응하는 구조개편 흐름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그룹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및 순환출자 해소가 상당 부분 진척된 점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대규모 구조개편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개정 공정거래법 중 사익편취 규제에 대비한 기업들의 국소적인 지분 변화나 사업구조 개편은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비상장 자회사를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개편 과정에서 사업구조가 변하거나 소유구조 또는 계열 내 중요성 등의 변화로 유사시 지원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경우 해당 업체들의 신용도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및 당사 유효등급은 7~12page 참조).

공정거래법 규제와 그룹 구조개편, 신용평가의 Flowchart



신용평가 관점에서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개편은 사업위험 또는 재무위험의 변화를 통해 자체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계열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의 변화로 최종신용등급에 반영될 수 있다. 당사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응하는 각 그룹들의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이나 재무구조의 변동, 또는 계열 내 중요성 및 유사시 지원가능성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평가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다.

3. 사익편취 규제 추가 해당 회사별 현황

이번 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회사 중 내부거래 금액이 50억원 이상²인 회사들은 다음과 같다.

3-1.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30% 미만 상장사

(단위: 억원, %)

기업집단	회사명	당사 유효등급 (장기/단기)	유사시 지원가능성	총수일가 지분율	매출	내부거래	비중
삼성	삼성생명보험	AAA/S	X	20.8	270,918	11,248	4.2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벌비스			30.0	144,745	31,220	21.6
에스케이	에스케이	AA+/S, A1	X	28.6	32,455	14,013	43.2
엘지	엘지			29.1	8,747	3,822	43.7
한화	한화			26.8	44,332	3,293	7.4
지에스	지에스건설	A/S, A2	+1notch	24.1	94,851	7,687	8.1
신세계	신세계	AA/S(보증), A1	X	28.6	15,576	2,045	13.1
신세계	이마트	AA/S(보증), A1	X	28.6	131,548	4,716	3.6
한진	한진칼	BBB/ ↓	X	25.3	651	350	53.7
엘에스	엘에스	A+/S	X	27.3	871	334	38.3
효성	효성중공업	A/S, A2	X	21.7	31,110	332	1.1
효성	효성첨단소재	A/S, A2	X	23.2	10,683	131	1.2
효성	효성티앤씨	A/S, A2	X	23.6	37,395	3,599	9.6
효성	효성화학	A/S, A2	+1notch	23.6	18,131	2,508	13.8
하림	하림지주			25.7	131	95	72.3
영풍	영풍정밀			21.3	750	101	13.5
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28.9	2,523	1,556	61.7
케이씨씨	케이씨씨건설	A-/S, A2-	+1notch	30.0	16,425	1,864	11.3
오씨아이	오씨아이	A/S	X	20.2	17,666	1,495	8.5
태영	태영건설	A/S(보증), A2	O	29.8	21,757	8,387	38.5
넷마블	넷마블			24.2	12,518	215	1.7
태광	대한화학			23.2	1,142	129	11.3
한라	한라홀딩스	A/S	X	24.3	6,206	1,485	23.9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A/P, A2	X	22.6	36,991	1,898	5.1

주1) 총수일가 지분율 및 매출액 및 내부거래 규모는 2019년 말 기준, 유효등급은 현재기준, 유사시 지원가능성은 O(자체신용도가 공시된 경우 notch 기재), X로 표시하였음.

2) 30개 회사 중 내부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회사(24개)만 기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0.10), 당사 정리

² 사익편취 규제 예외조건 중 최소 내부거래금액이 50억원인 점을 감안함. 단, 정률요건도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이라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3-2.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50% 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3-1. 및 4. 항목 회사의 자회사)

(단위: 억원, %)

기업집단	회사명	당사 유효등급 (장기/단기)	유사시 지원가능성	모회사	모회사 지분율	매출	내부거래	비중
삼성	제일패션리테일			삼성물산	100.0	270	270	100.0
삼성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100.0	19,769	7,565	38.3
삼성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물산	100.0	1,998	1,016	50.9
에스케이	에스케이가스	AA-/S, A1	X	에스케이디스크버리	65.4	39,734	8,068	20.3
한화	한화에너지	AA-/N	X	에이치솔루션	100.0	5,564	1,551	27.9
지에스	지에스글로벌	A/S	+1notch	지에스	50.7	33,065	3,426	10.4
지에스	지에스스포츠	A3+	O	지에스	100.0	348	247	71.0
지에스	지에스리테일	AA/S, A1	X	지에스	65.8	86,211	338	0.4
지에스	지에스에너지	AA/S, A1	X	지에스	100.0	1,841	56	3.0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AA-/S, A1	X	현대중공업지주	74.1	190,462	39,566	20.8
현대중공업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중공업지주	100.0	7,895	484	6.1
씨제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씨제이	100.0	20,590	3,494	17.0
씨제이	씨제이푸드빌	A3+	O	씨제이	96.0	8,141	718	8.8
두산	네오플렉스			두산	96.8	155	67	43.6
두산	두산베어스			두산	100.0	580	162	27.9
두산	오리콤			두산	62.3	1,130	278	24.6
엘에스	엘에스네트웍스	BBB+/N, A3+	+1notch	이원	81.8	2,175	182	8.4
금호아시아나	금호고속관광[경기]			금호고속	100.0	60	58	95.7
현대백화점	현대캐터링시스템			현대그린푸드	80.2	1,330	1,330	100.0
교보생명보험	교보정보통신			교보생명보험	100.0	492	328	66.6
교보생명보험	교보문고			교보생명보험	100.0	6,100	82	1.3
교보생명보험	케이씨에이손해사정			교보생명보험	100.0	347	312	90.1
교보생명보험	교보리얼코			교보생명보험	100.0	1,773	516	29.1
효성	효성트랜스월드			효성	100.0	2,028	1,521	75.0
효성	엔에이치테크			효성티앤에스	100.0	508	247	48.6
효성	엔에이치씨엠에스			효성티앤에스	100.0	434	434	100.0
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영창			에이치디씨	94.3	774	355	45.8
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에이치디씨	87.1	1,206	319	26.4
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에이치디씨	56.6	3,641	1,373	37.7
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스포츠			에이치디씨	100.0	139	119	86.0
케이씨씨	동주			세우실업	90.0	185	132	71.3
코오롱	코오롱글로벌			코오롱	74.4	34,338	517	1.5
코오롱	코오롱베니트			코오롱	100.0	4,007	711	17.7
코오롱	환경에너지솔루션			코오롱	80.5	892	177	19.9
코오롱	코오롱엘에스아이			코오롱	100.0	886	392	44.2
이랜드	이랜드파크			이랜드월드	51.0	3,459	148	4.3
이랜드	이랜드건설			이랜드월드	82.6	1,440	320	22.2
이랜드	이랜드시스템스			이랜드월드	100.0	396	358	90.3
이랜드	이앤씨월드			이랜드월드	100.0	347	95	27.4
이랜드	이랜드스포츠			이랜드월드	100.0	86	71	83.3
이랜드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97.2	21,123	521	2.5
이랜드	이네스트			이랜드월드	100.0	974	738	75.8
SM	에스엠하이플러스			에스엠스틸	54.4	1,073	678	63.2
DB	디비에프아이에스			디비아이엔씨	100.0	471	471	100.0
세아	세아씨엠			세아제강지주	100.0	3,822	62	1.6
세아	세아특수강			세아홀딩스	68.7	5,874	213	3.6
세아	세아엠앤에스			세아홀딩스	83.9	5,288	961	18.2
세아	세아네트웍스			세아홀딩스	100.0	1,007	242	24.0
세아	세아엔지니어링			세아홀딩스	100.0	579	102	17.6
세아	세아베스틸	A+/N, A2+	X	세아홀딩스	58.9	17,618	198	1.1

공정거래법 개정, 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될 전망

기업집단	회사명	당사 유효등급 (장기/단기)	유사시 지원가능성	모회사	모회사 지분율	매출	내부거래	비중
세아	세아엘앤에스			세아홀딩스	100.0	4,324	904	20.9
호반건설	호반자산개발			호반건설	100.0	757	64	8.5
호반건설	호반티비엠			호반산업	99.9	245	110	44.9
아모레퍼시픽	에스브이			아모레퍼시픽그룹	80.5	467	60	12.9
아모레퍼시픽	에스트라			아모레퍼시픽그룹	100.0	1,111	815	73.3
아모레퍼시픽	코스비전			아모레퍼시픽그룹	100.0	1,759	1,758	100.0
아모레퍼시픽	퍼시픽패키지			아모레퍼시픽그룹	100.0	546	525	96.1
아모레퍼시픽	퍼시픽클라스			아모레퍼시픽그룹	100.0	725	548	75.6
태광	티캐스트			티알엔	100.0	739	87	11.7
태광	한국케이블텔레콤			태광산업	91.6	900	186	20.6
태광	서한물산			태광산업	100.0	82	82	100.0
태광	세광패션			태광산업	100.0	76	76	100.0
태광	흥국화재해상보험	A+/S	+1notch	흥국생명보험	59.6	42,682	90	0.2
동원	동원에프앤비	A+/S	X	동원엔터프라이즈	71.2	17,093	144	0.8
동원	동원시스템즈	A/S	X	동원엔터프라이즈	79.9	5,194	1,087	20.9
동원	동원산업	AA-/S, A1	X	동원엔터프라이즈	62.7	9,953	2,163	21.7
동원	동원건설산업			동원엔터프라이즈	100.0	3,830	513	13.4
IMM인베스트먼트	아이엠엔베스트먼트	A3+	X	아이엠엠	79.2	416	182	43.8
애경	에이케이에스앤디			에이케이홀딩스	75.7	2,487	496	19.9
애경	에이케이캠텍			에이케이홀딩스	81.4	2,766	331	12.0
유진	천안기업			유진기업	80.9	67	66	98.8
유진	유진엠			유진기업	100.0	129	110	85.6
유진	유진프라이빗에쿼티			유진기업	100.0	72	70	97.4
유진	유진아이티서비스			유진기업	100.0	54	51	93.5
유진	한국통운			유진기업	100.0	2,509	365	14.5
유진	유진에이엠씨			유진기업	100.0	100	82	82.3
삼양	삼양사	AA-/S	X	삼양홀딩스	59.7	15,508	252	1.6
삼양	삼양데이터시스템			삼양홀딩스	100.0	606	165	27.2
삼양	삼양이노컴			삼양홀딩스	97.3	2,391	1,401	58.6
삼성	삼성카드	AA+/S, A1	+1notch	삼성생명보험	71.9	32,183	1,372	4.3
삼성	삼성자산운용			삼성생명보험	100.0	1,957	492	25.1
삼성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생명보험	99.8	2,016	2,016	100.0
삼성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삼성생명보험	100.0	657	588	89.5
현대자동차	지마린서비스			현대글로벌비스	100.0	153	101	66.0
에스케이	에스케이임업			에스케이	100.0	891	628	70.5
에스케이	에스케이실트론	A/S, A2	+1notch	에스케이	51.0	15,415	2,765	17.9
에스케이	에스케이이엔에스	AA+/S, A1	X	에스케이	90.0	8,148	61	0.7
엘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AA-/S(보증)	O	엘지	100.0	17,007	11,900	70.0
엘지	엘지스포츠			엘지	100.0	667	295	44.3
엘지	엘지경영개발원			엘지	100.0	917	908	99.1
한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	50.6	6,182	979	15.8
한화	한화건설	A-/S, A2-	+1notch	한화	95.2	38,234	10,396	27.2
지에스	자이에너지운영			지에스건설	100.0	671	533	79.5
지에스	지씨에스			지에스건설	99.8	643	484	75.2
지에스	비에스엠			지에스건설	100.0	182	74	40.5
지에스	자이에스앤디			지에스건설	61.2	2,779	1,165	41.9
신세계	신세계디에프	A2+	O	신세계	100.0	28,130	269	1.0
신세계	까사미아			신세계	95.7	1,184	135	11.4
신세계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	60.0	2,142	1,162	54.2
신세계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신세계	61.0	1,913	138	7.2
신세계	신세계엘앤비			이마트	100.0	1,072	611	57.0
신세계	신세계프라퍼티			이마트	100.0	1,417	446	31.5

공정거래법 개정, 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될 전망

기업집단	회사명	당사 유효등급 (장기/단기)	유사시 지원가능성	모회사	모회사 지분율	매출	내부거래	비중
신세계	이마트24			이마트	100.0	13,545	263	1.9
신세계	에스에스지닷컴			이마트	50.1	8,442	2,424	28.7
신세계	신세계조선호텔	A-/N, A2-	+1notch	이마트	99.9	2,089	149	7.1
한진	칼호텔네트워크			한진칼	100.0	1,110	405	36.5
엘에스	엘에스아이앤디	BBB+/N	+1notch	엘에스	92.2	471	154	32.7
엘에스	엘에스니꼬동제련	A1	X	엘에스	50.1	76,429	12,725	16.6
엘에스	엘에스엠트론	A-/N, A2-	+1notch	엘에스	100.0	7,500	70	0.9
엘에스	엘에스글로벌 인코퍼레이티드			엘에스	100.0	7,040	1,452	20.6
엘에스	엘에스전선	A+/S, A1	X	엘에스	89.2	32,428	2,148	6.6
엘에스	에스코	AA/S, A1	X	에스코홀딩스	100.0	8,984	220	2.5
효성	세빛섬			효성티앤씨	57.8	90	85	95.1
하림	선진	BBB+/S	X	하림지주	50.0	7,794	1,015	13.0
하림	팜스코			하림지주	56.3	9,592	578	6.0
하림	하림			하림지주	57.4	8,048	295	3.7
하림	참트레이딩			하림지주	100.0	344	128	37.3
하림	제일사료	A1(보증)	X	하림지주	88.1	6,207	979	15.8
하림	동림건설			하림지주	100.0	82	67	81.5
하림	농업회사법인 주원산오리			하림지주	93.4	716	65	9.1
오씨아이	오씨아이정보통신			오씨아이	100.0	121	89	73.9
오씨아이	오씨아이스페셜티			오씨아이	78.1	221	127	57.4
태영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	A+/S, A2+	X	태영건설	62.6	736	223	30.4
넷마블	넷마블엔파크			넷마블	76.0	84	65	78.3
넷마블	넷마블체리			넷마블	80.8	475	475	100.0
넷마블	넷마블넥스			넷마블	100.0	165	160	96.6
넷마블	아이지에스			넷마블	100.0	367	292	79.6
넷마블	넷마블네오			넷마블	80.4	1,058	1,057	99.9
넷마블	넷마블엔투			넷마블	99.8	277	277	100.0
넷마블	지스퀘어퍼에프브이			넷마블	88.4	964	875	90.7
넷마블	넷마블펀			넷마블	86.9	375	375	100.0
넷마블	넷마블몬스터			넷마블	76.2	355	355	100.0
한라	위코			한라홀딩스	100.0	301	237	79.0
동국제강	동국시스템즈			동국제강	100.0	1,931	341	17.7
금호석유화학	금호티앤엘			금호석유화학	100.0	665	380	57.2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석유화학	100.0	13,838	190	1.4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A/S, A2	X	하이트진로홀딩스	50.3	18,301	63	0.3
하이트진로	진로소주			하이트진로홀딩스	100.0	389	216	55.4

주1) 총수입가 지분율 및 매출액 및 내부거래 규모는 2019년 말 기준, 유효등급은 현재기준, 유사시 지원가능성은 O(자체신용도가 공시된 경우 notch 기재), X로 표시하였음.

2) 313개 회사 중 내부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회사(138개)만 기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0.10), 당사 정리

4. 기존 사익편취 규제 해당 회사별 현황

법 개정 이전에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던 회사(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 중 내부거래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회사들은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

기업집단	회사명	당사 유효등급 (장기/단기)	유사시 지원가능성	상장 여부	총수일가 지분율	매출	내부거래	비중
삼성	삼성물산	AA+/S, A1	X	상장	31.6	199,836	50,993	25.5
현대자동차	현대머티리얼			비상장	100.0	2,015	99	4.9
현대자동차	현대커머셜	AA-/S, A1	+1notch	비상장	31.6	4,777	104	2.2
지에스	삼양인터내셔널			비상장	92.5	2,445	110	4.5
지에스	송산			비상장	100.0	286	52	18.1
지에스	지에스			상장	43.3	3,653	1,231	33.7
지에스	지에스네오텍			비상장	100.0	4,293	126	2.9
신세계	광주신세계			상장	52.1	1,549	133	8.6
씨제이	씨제이			상장	42.9	1,817	1,282	70.6
한진	정석기업			비상장	28.7	419	87	20.6
한진	태일캐터링			비상장	99.6	90	90	100.0
두산	두산	BBB/N	X	상장	37.0	20,607	2,310	11.2
대림	대림코퍼레이션	A+/S, A2+	X	비상장	52.8	26,875	2,442	9.1
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	AA/S	X	비상장	62.9	2,706	247	9.1
미래에셋	미래에셋캐피탈	AA-/S	+1notch	비상장	34.8	2,533	438	17.3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A1	X	상장	38.4	15,427	634	4.1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AAA/S	X	비상장	36.9	129,770	164	0.1
효성	신동진			비상장	100.0	208	78	37.2
효성	효성	A2	X	상장	53.7	3,429	1,469	42.9
효성	갤럭시아디바이스			비상장	100.0	317	141	44.4
효성	공덕개발			비상장	100.0	107	100	93.7
효성	효성아이티엑스			상장	35.3	3,781	203	5.4
효성	효성티앤에스			비상장	42.4	6,890	141	2.0
영풍	영풍			상장	40.1	13,480	1,779	13.2
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	A+/S	X	상장	35.4	501	145	28.9
케이씨씨	케이씨씨	AA-/S(보증)	X	상장	39.5	23,966	1,343	5.6
케이씨씨	티앤케이정보			비상장	100.0	52	50	97.3
케이씨씨	세우실업			비상장	65.0	163	82	50.3
코오롱	코오롱			상장	47.6	605	432	71.4
오씨아이	유니드글로벌상사			비상장	100.0	4,799	219	4.6
오씨아이	군장에너지			비상장	24.4	4,788	551	11.5
오씨아이	삼광글라스 ^{주3}	A+/S, A2+	X	상장	37.1	2,736	701	25.6
이랜드	이랜드월드			비상장	48.7	11,769	1,912	16.2
SM	삼라			비상장	68.8	808	781	96.7
SM	삼라마이다스			비상장	100.0	80	80	100.0
DB	디비아이엔씨			상장	39.5	1,930	563	29.2
세아	세아홀딩스			상장	75.6	127	115	90.5
한국타이어	한국네트웍스			비상장	60.0	440	256	58.3
한국타이어	한국프리지전웍스			비상장	49.9	1,119	277	24.7
한국타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장	73.9	630	630	100.0
호반건설	호반건설	A/S, A2	X	비상장	76.9	19,772	2,845	14.4
호반건설	호반산업	A3+	X	비상장	42.0	5,478	1,206	22.0
중흥건설	중흥건설			비상장	90.6	9,162	2,349	25.6
중흥건설	중흥토건			비상장	100.0	14,731	4,351	29.5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상장	53.0	1,537	254	16.5
태광	태광산업			상장	38.8	20,272	359	1.8

공정거래법 개정, 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될 전망

기업집단	회사명	당사 유효등급 (장기/단기)	유사시 지원가능성	상장 여부	총수익가 지분율	매출	내부거래	비중
태광	흥국생명보험	AA/S	X	비상장	82.0	44,009	514	1.2
동원	동원엔터프라이즈	A+/S	X	비상장	94.0	459	422	91.9
장금상선	장금마리타임			비상장	100.0	1,691	75	4.4
애경	에이텍			비상장	50.0	591	267	45.1
애경	애경피앤티			비상장	55.0	177	146	82.6
애경	에이케이아이에스			비상장	100.0	730	509	69.7
애경	에이케이홀딩스			상장	46.0	339	94	27.8
하이트진로	연암			비상장	100.0	212	53	25.0
하이트진로	대우컴바인			비상장	100.0	155	144	93.0
하이트진로	대우화학			비상장	100.0	303	264	87.1
하이트진로	서영이앤티			비상장	99.9	908	203	22.3
유진	유진기업			상장	32.1	8,070	267	3.3
KG	케이지제로인			비상장	58.7	320	75	23.3
삼양	삼양홀딩스	AA-/S	X	상장	37.4	581	396	68.1

주1) 총수익가 지분율 및 매출액 및 내부거래 규모는 2019년 말 기준, 유효등급은 현재기준, 유사시 지원가능성은 O(자체신용도가 공시된 경우 notch 기재), X로 표시하였음.

2) 2020년 규제 대상 210개 회사 중 내부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회사(60개)만 기재

3) 2020년 10월 31일 군장에너지와 합병하여 SGC에너지로 사명 변경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0.10), 당사 정리

유의사항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당사”)가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financial obligations)를 발행사/기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 기타 다른 위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신용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채권평가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이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신용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신용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자 부여한 특정 신용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당사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재생산, 배포,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